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공익신고 이의신청[2025이의(공익)3254] 처리(기각) 통지

1. 우리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가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건(2025공익1278)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의 규정에 따라 "기각"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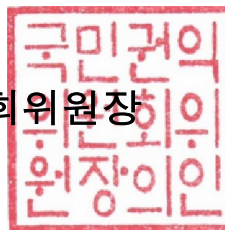
가. 신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기관(고양시)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①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 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창고내부에 설치하였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②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 라고 한 사항에서와 같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작업자가 적층식 랙에 출입·활동하는 것은 물류설비 운용에 수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며, 따라서, 민원인이 첨부한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 “그 외 타 용도 (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로 사용될 경우라면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울 것” 에서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설비 운용에 수반되는 행위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현장 확인 당시, 해당 건축물(00시 00구 00동 701번지)에 설치된 적층식 랙은 제조업과 같이 물품을 생산하는 행위가 아닌 화물의 유통가공 등 물류업무 수행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통가공 및 물류업무 수행용 외의 타용도의 사용은 확인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 ③위에서 설명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에 따르면 적층식 랙(KS T 2027)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을 위한 물류설비(장치)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적층식 랙을 확인한 결과, 기둥과 벽등에 일체화되지 않고 자체적인 지지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점, ④아울러, 적층식 랙의 구조적 영향 및 설치·해체·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법부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6491 및 2020경기행심1398)를 참고하면, 적층식랙 구조물의 자재들은 용접 등으로 일체화되어 있으나 벽과 이격거리를 두고 앵커볼트 조립 형태로 기둥이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바, 분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 바닥에 정착되었다거나 구조적으로 건물과 일체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등을 사유로 조사기관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한 적층식 랙은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해체·이전이 가능한 물류설비(장치)에 해당하며, 그 이용 형태 또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무단 증축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이의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국토해양부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공문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및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자료 등을 근거로 답변을 제출하였고, 조사기관이 제출한 답변내용과 최초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리 해당 조사기관의 답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의신청 자료에 최초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만으로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기관의 답변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재수사 요구 등)에 따라 ‘기각’ 한다.

3.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조사관

노은숙

공익심사팀장

전결 2026. 1. 30.

안영정

협조자

시행 공익심사팀-1297

(2026. 1. 30.)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어진동)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246

팩스번호 044-200-7974

/ nes0726@korea.kr

/ 비공개(1,6)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